

#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박순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7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1일

발 의 자 : 박순규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기덕, 김재형, 김제리,  
김종무, 김태수, 김평남,  
김희걸, 박기재, 박상구,  
성흠제, 송명화, 송아량,  
양민규, 이영실, 임종국,  
장상기, 전석기, 최 선,  
최웅식, 최정순, 황규복  
의원(21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(다시세운광장)은 일반적인 평면 광장과 달리 광장 바닥면과 대지 바닥이 최고 높이차 3.6m의 추락위험이 있는 시설물인 반면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‘시설물안전법’) 제1종, 제2종, 제3종 시설물에는 해당되지 않음.
- 「시설물안전법」 1~3종에 해당되는 시설물은 법령에 의해 안전하지 않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은 사용중지 등의 관련 근거가 부족하므로,  
난간 및 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설물 이용 시 시민과 사용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. (안제9조제1호의2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9조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) 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의2.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